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3

발의연월일: 2020. 7. 10.

발 의 자:이종배・김선교・이종성

박덕흠 · 김예지 · 추경호

최승재 • 유경준 • 윤영석

이달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 가 발생했지만,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.

인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.

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·관리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03년 제정되어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.

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있으나, 논의가 부족했던 광업의 경우 동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함.

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의 범위에 '광업'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 (안 제12조). 법률 제 호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2호 중 "농업 또는 어업"을 "농업, 어업 또는 광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	제12조(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
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례) ①
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	
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	
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	
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	
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	
고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근로	
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	
를 준용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서비스업, 제조업, <u>농업 또는</u>	2 <u>농업, 어</u>
<u>어업</u> 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	<u>업 또는 광업</u>
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	
사업 또는 사업장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